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변 중 오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2년 12월 26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12월 27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내 운용 중인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하여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고시한 충북의 소음대책지역은 청주비행장(공군17전투비행단), 성무비행장(공군사관학교), 충주비행장(공군19전투비행단)으로 해당 지역의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 제정의 정당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과 지원 확보 노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충청북도 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 관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 지원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여 일반인들이 조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3조는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와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1. 3. ~ '23. 1. 9.)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충남과 경북 2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대책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 내 운용 중인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하여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5조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복지 증진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26년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사업 선정 후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선정, 관련 예산 확보 등 충청북도의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